

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 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6 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정보통신예절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 활동 전반적 사항

제2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교내생활

제7조 【기본몸가짐】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습관화한다.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의 권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 ②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 ③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 ④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 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 ⑥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 ⑦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 ⑧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 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 ⑩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 ⑪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 ⑫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 ⑬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 ⑭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 ⑮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 ⑯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 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 ⑱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 ⑲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 ⑳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 ㉑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 ㉒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 ㉓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언제 어디서든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4. 학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했을 경우 그 값을 변상한다.

제11조 【소지품 검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 ②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③ 도박에 관련된 물건
- ④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 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1.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단,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5.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으며 서로 존중과 배려해주는 태도를 갖는다.

제1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학교홈페이지)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5조 【등교】

- 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교시간을 8시 40분부터 9시까지로 한다.
- ② 교실에는 9시까지 입실한다.
- ③ 실외화를 신고 등교하여야 하며,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
- ④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 담임선생님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

제16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제17조 【여가활동】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관, 강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활동은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한다.
4.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8조 【용의복장】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단정한 몸차림을 해야 한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하되, 간편복은 지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9조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한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리정돈, 학습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파손 했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지도】 학교는 안전지도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현장 학습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3.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4.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녹색 어머니회), 실버도우미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5. 학생은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제21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에 힘쓰며, 진학 상담 및 교육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 22 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⑧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1. 물건(체)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려고 할 때
 - 물건(체)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행위
 - 학생의 몸을 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완력을 쓰는 행위 등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 2. 싸움을 말릴 때
 - 학생의 몸을 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완력을 쓰는 행위 등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 3. 심한 장난 등 시급하게 학생의 행동을 중단시켜야 할 때
 - 학생의 몸(손)을 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완력을 쓰는 행위 등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다른 학생과 좌석 교체)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사의 책상 옆자리 또는 교실 뒤편의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교시 동안 분리 후 복귀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 | |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나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나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교원이나 교직원이 관찰 가능한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으로 교실 또는 수업장소를 이탈하는 학생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협력하여 찾으러 간다. * 특수학급에서의 상황도 일반학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3,4호의 분리된 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도는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한다. * 3호의 분리 조치 요청 시 간략하게 구두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별도의 형식적 보고서(또는 경위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 | | |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금일 또는 익일에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제9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커터칼,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 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
| 4 학생생활규정으로 소지금지한 물품 | | |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26 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27 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28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0 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절 교외생활

제31조 【교외생활】

학교 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를 할 때에는 출결 등과 관련해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3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도록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내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며, 체벌을 지양하고 사랑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33조 【사이버 생활】 교직원과 학생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한다.

제34조 【정보통신기기관리】 교직원과 학생은 교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요인으로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를 소지할 수 있다.
2. 등교 후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의 전원을 끄고, 하교한 이후에 전원을 켜도록 한다. 단, 필요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3. 2의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교사가 당일만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 줄 수 있다.
4. 휴대전화 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잘 간수하도록 한다.
5.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학습 용도로만 사용하며,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학교정보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10일 내에 개정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7조 【목적】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중 절차에서의 권리)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본원칙】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회복적 대화, 담임상담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에 의거 처리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문제 행위에 대한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의 평소 몸가짐과 생활환경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도 과정을 참작하여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1조 【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한다.
4.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7.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8.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9.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4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5조 【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6조 【선도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내 봉사활동은 수업전 또는 수업 종료 후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 교육이수 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통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1.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제48조 【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 내 용 | 선도기준 | | | |
|----|---|--------|------|---------|------|
| | | 학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 |
| 1 |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단,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함) | ○ | ○ | ○ | ○ |
| | | ○ | ○ | ○ | ○ |
| 2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3 |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 4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 5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
| 6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 7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 8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9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
| 10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11 |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12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13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 14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15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 16 |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 | ○ |
| 17 | 수업 시간 중 지속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제49조 【학교장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재심의신청】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하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로 한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51조 【심의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회
- 심의과정 설명
-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2조 【재심의 절차】

1. 학교장은 제50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4조, 제55조 규정에 따른다.
3.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53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할 수 있다.

제54조 【선도내용 통보】

- 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②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55조 【징계사실의 공표금지】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56조 【선도학생의 행사 및 시험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7조 【결과 처리 ▪ 열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8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59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60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①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②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1조 【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62조 【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63조 【학급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제64조 【직무 및 선출】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와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4.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5.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65조 【전교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기능
 1. 주생활목표의 실천사항 협의
 2. 기타 협의 사항
- ③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66조 【임원 자격 상실】

재임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의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받았을 경우

제67조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68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 자치회 등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자치회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회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학기별 1회 이상)
- 학교는 독립적인 학생 자치실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회 예산 자율권을 보장한다.

제5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6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시행규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 【적용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생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4조 【위원회 운영】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 ① 위원회는 교사 3명, 학생 3명, 학부모 1명, 전문가위원 1명 계 8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의 수가 위원회 구성의 1/3이상으로 구성 되도록 하며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 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전교학생자치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7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8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7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